신진주역세권 데시앙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안내

대출대상 • 계약금 10% 이상을 납부 완료한 분양계약자 &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 당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보증발급 가능한 손님

대출한도 • 분양가의 60%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발급 범위내

• 중도금납부 총 6회차

대출금리 연 4.29% [기준금리 1.69%(신규COFIX 6개월변동) + 가산금리 2.6%]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2022.02.09) 적용금리이며,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에 따라 최종금리가 확정되고, 6개월 단위로 변동됩니다.

* COFIX 금리는 매월 1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 됩니다. (www.kfb.or.kr)

대출이자 중도금이자 후불제 납입방법 (시행사 우선 부담)

대출만기 2024. 8. 30 (단, 보증서 만기일 이내)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

중도상환 없음

해약금 단, 은행 변경을 목적으로 대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정상 징구합니다.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0.7%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보증료 분양자본인부담(연 0.13%)

부대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납부 (손님 부담 : 1억 이하 35,000원, 1억 초과 75,000원)

※ 손님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대출 실행 전 영업일 본인계좌 잔액유지)

제출서류 4페이지 중도금대출 필요서류 참조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2) 중도금대출_신청_비대면: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보시기전 반드시 비대면 계좌개설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계좌 미개설시, 중도금대출 접수 불가)

(1) 계좌개설



신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2.03.06

-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 비대면 계좌개설 (보증료 및 수입인지대 자동이체 계좌)
 - 비상금대출 신청 (보증료 및 수입인지대 계좌잔액 부족시 이용가능)
 - ※ 하나은행 계좌를 보유중이라도 중도금대출 업무용으로 비대면 개설 부탁드립니다.

(개설방법 3페이지 참고)

(2) 네이버 검색창에서 '하나은행 진주중앙지점/진주지점' 검색 후 사이트 들어가서 URL 클릭

진주중앙지점 102동, 103동, 106동(1층~13층) 진주지점 101동 일부, 104동, 105동 계약세대

- 비대면 계좌개설, 하나원큐 가입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 계좌개설, 모바일뱅킹 가입은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세대는 대출신청 전에 하나은행 진주중앙지점/진주지점을 방문하시어. 계좌개설, 모바일뱅킹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공급계약서 지참)
- 비대면 계좌 개설 진행시 "신분증" 지참 반드시 필요 (신분증 촬영 단계가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안내사항]

-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 방법: 이자 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로 계산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로부터 지급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
- * 이자결산일: 매년 3,6,9,12월의 제3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이자결산일 익일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 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가입 매뉴얼









약관 동의



금융거래 정보









영업점 정보



추가인증

신청내역 확인



신분증 촬영









신청 완료





(3) 중도금 대출 신청기간: 2022,03,02 ~ 2022,03,06

- 모바일 대출 신청 및 약정 (단독명의만 해당)
- ① 계좌개설 및 모바일뱅킹 가입후, 하나은행 하나원큐 (로그인) 접속후 스마트폰으로 중도금 대출 신청
 - 1) 공동명의
 - ① 비대면 계좌개설
 - ② 중도금 대출 필요서류 지참하여 명의자 모두 홍보관 (대출 서류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2) 단독명의
- ① 비대면 계좌개설 ② 모바일 대출신청
- ③ 명의자 대출필요 서류 지참하여 홍보관 (필요서류 제출)
- ② 대출신청 서류를 지참하시고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모바일접수하셔도 본인방문필) (방문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 ③ 공동 계약 세대는 모바일 대출 신청이 불가하여, 현장에서 대출서류를 자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동계약자의 경우 공동계약자 모두 오셔야 하며, 대리인 작성이 불가합니다.)

중도금 모바일 대출 신청방법 6페이지 참고

② 중도금 대출 필요서류

- (1) 필수 준비서류 : 등,초본,가족관계 증명서는 꼭 괄호안의 조건대로만 가능함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 ② 분양계약서 원본
- ③ 계약금납부영수증사본 또는 무통장입금증
- ④ 주민등록 등본 (세대원 포함, 주민번호 및 세대주와 관계 표시, 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와 세대 분리시 등본 각각 제출)
- ⑤ 주민등록 초본 전세대원 필수(주민번호 및 인적사항포함, * 미성년자녀, 등본 같이있는 부모님, 자녀 필수 제출) (과거 5년 이상 주소 표시,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포함)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TEL: 1577-1000 (#단축 0→5→1)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후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⑦은 공동명의자 각각 제출
- ⑧ 소득증빙자료 (아래 소득증빙자료 중 해당 서류 준비)
- ※ 법인 및 대리인, 만14세 미만,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사기 등록자, 해외납세자, 단기다수계좌 개설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용한도가 제한됩니다.
 (영업점 출금/이체: 일 합산 100만원, ATM출금/이체: 일 각각 100만원, 전자금융 이체: 일 100만원)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증빙서류 (아래에서 택1)

현재 직업	증빙서류
직장인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0년/2021년) - 현재 휴직자 : 휴직전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복직 및 재직 1년 미만 : 갑근세납부증명원, 소득원천징수영수부, 급여명세표 등 - 재직회사 도장 날인 필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최근2개년) - 2021년 이후 개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1년) or 무소득자 준비서류 준용
연금수급자	연금증서(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연금입금통장 사본(3개월이상 입금내역확인필요)
무소득자	소득증빙 없는 경우 국세청의 사실증명원(납세신고 사실이 없음)과 아래 서류 중 1개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 팩스 신청) → 대출신청인이 지역세대주인 경우만 제출 가능 ②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2020년) (국세청 홈텍스) or 카드사로 연락 (자세한 사용내역이 아닌 월별 합계금액으로 필요함)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최근 3개월)

(3) 보증료 우대서류

대상	준비서류
저소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40백만원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증,배우자또는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확인용, 기혼인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배우자소득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필요없음, 배우자 미등재시 배우자확인서류 추가징구)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가구 (보증신청인또는배우자,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가구)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군수청장발급) 또는 장애인등록증
고령자가구 /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이 배우자,직계존비속, 친족등의 동거인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고령자)	주민등록등본 (만65세이상)
노인부양가구	주민등록등본
신혼 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이하,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문화 가족 (배우자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외국인등록증 및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없는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직계존비속인세대원중 1인이상이 국가유공자,또는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인가구)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확인원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확인원
의사상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중 1인이상이 의사상자수권자임을 확인받은가구)	의사상자(유족)증서
모범납세자 (납세자의날,정부,국세청장표창수상한자로우대기간 미종료인자)	모범납세자증명서 (1개월이내발급분)





중도금대출(모바일) 프로세스 *적합성·적정성확인후중도금대출 진행

로그인

우측상단 [전체메뉴]클릭

[디지털브랜치] 클릭

영업점명 입력>돋보기 클릭

중도금대출 배너 클릭











중도금대출 신청 클릭

대출신청 클릭

전체동의 클릭

기본정보 입력

▶ 대출신청정보 입력











대<u>출금액 확인</u>

대출약정 작성

본인인증 선택 🕨 최종

최종 인증 수단 제출

대출신청 완료









* 최초 로그인한 수단으로 인증 제출 처리 됩니다.





③ 중도금대출 대출신청접수 및 장소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홍보관)안내

- (1) 단독명의 모바일 신청기간: 2022년 03월 02일(수) ~ 2022년 03월 06일(일) * 추후 변경가능,모바일 신청 가능
- ※ 모바일 단독·공동명의 비대면 신규계좌 개설할 것
- (2) 동별 서류접수 장소(2022, 03, 02 ~ 2022, 03, 06)
- 신청세대

진주중앙지점 102동, 103동, 106동(1층~13층) **진주지점** 101동 일부, 104동, 105동 계약세대

- 신청장소: 진주시 충무공동 87-20번지(데시앙 홍보관)
- 문의처

진주중앙지점 전화: 055)743-1015 팩스: 055)743-4512

차장 현득환(내선303), 과장 구세라(내선104), 대리 이유진(내선301)

진주지점 전화: 055)744-1111 팩스: 055)743-4151

차장 성기열(내선301), 대리 유나연(내선305), 대리 조정민(내선312)

- ※ 지정된 기간내에 대출 신청이 접수 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자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보증료 및 수입인지대금은 사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① 분양계약자는 대출신청 서류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홍보관)에 내방하여 대출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기간내 내점하여 대출서류 제출 필수)
- 일시: 2022년 03월 02(수) ~ 2022년 03월 06일(일)
- 주소: 진주시 충무공동 87-20번지(데시앙 홍보관)
- ② 공동분양자의 경우 반드시 분양자 전원이 함께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이 필요하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압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신규COFIX 6개월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손님의 신용도 및 당행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대출 실행시 여신 부적격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될 경우 대출이 불기할 수 있습니다.
- * 여신 부적격자(신용관리대상자, 고의로 허위 위변조 등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 당행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자, 특수채권 보유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 보유자, 당행심사부적격자, 신용등급(KCB스코어) 530점 미만 해당자.
- ※ 향후 잔금대출 전환시 DSR산정, DTI산정, 비거치−분할상환 등 규제가 적용되어 잔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보증료 및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안내장은 고객 여러분께 대출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내용을 간략히 안내하였습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본 홍보물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